

決算은 어떻게 하나



조 응 희

<영남대 축대 교수>

기록수정자료의 작성

1) 계정기록의 수정은 왜 필요한가?

앞에서 시산표를 만들어 모든 거래의 기록을 검토하고 정정함으로써 전기(轉記)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확인된 원장계정을 기초로 하여 곧 결산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이대로 결산을 하면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에 의한 결산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제에 부합된 정확한 손익의 산정(算定)을 아직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간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거래를 아무리 정확하게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은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을 나타낼 뿐이며, 각 계정의 잔액이 반

드시 실제의 재고(在庫)와 같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창고에 들어있는 여분이 구입현물 대장을 통하여 일일이 그 증감상태가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은 구입과 사용에 한하므로 분실(紛失)도난·부패·변질·등으로 인한 수량의 감소라든가 가격의 변화가 전부 기록되지 않는 이상, 장부가격과 실제의 재고액과는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건물·비품·농기구와 같은 고정자산은 사용을 거듭하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들고 소모되고 있는데, 이들의 비용도 아직계산되지 않고 있으며, 외상으로 판매한 계란대금은 반드시 전액 회수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구입과 동시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하여 다 써버린 것으로 간주한 배합사료 중에는 아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계정기록의 불완전한 점을 고치기 위하여 기말에 한꺼번에 실제의 변화 과정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정기록을 적절히 修正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결산시에는 실제의 변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말의 재산 재고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극력 원장계정면을 기말의 실상에 맞추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직 참고 안에 남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제의 증감변화는 장부기록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들이 눈에 보이게 주고 받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부기상으로는 엄연한 거래사실이므로 당연히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성질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무적으로도 번잡하므로 그 때 마다 기록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제정의 기록이란 항상 불완전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결산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이러한 계정기록의 불완전한 점을 고치기 위하여 기말에 한꺼번에 실제의 변화과정을 정확히 판단해서, 계정기록을 적절히 수정(修正)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결산시에는 실제의 변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말의 재산재고조사(財産在庫調査)를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극력 원장계정면을 기말의 실상(實狀)에 맞추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절차를 결산정리(決算整理)라고 한다. 그리고 결산정리사항을 분개장을 통해서 원장계정에 전기하는 것을 정리기입(整理記入) 혹은 수정기입(修正記入)이라고 한다.

2) 결산정리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

수정기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미수수익(未受收益) : 이미 받았어야 할 이자나 임대료 등과 같이, 이미 수익으로서 발생은 되어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 수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② 미지급비용(未支給費用) : 당회계년도에 이미 발생해 있고 당연히 당해년도의 부담으로 될 비용으로서, 아직 현금지출이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지 않는 것.

③ 선급비용(先給費用) : 이미 지급되어 기장이 끝난 비용 가운데서, 그 기(期)에 속하지 아니하고 차기의 비용이 되는 부분이다. 전불비

용(前拂費用)이라고도 하며, 이는 미경과비용(未經過費用)이다.

④ 선수수익(先受收益) : 이미 수취한 수익 증가기 이후의 부분으로 파악되는 금액으로서, 이미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하더라도 당기의 수익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부채의 일종으로서 처리되어야 할 금액이다.

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 토지를 제외한 모든 고정자산은 시일의 경과와 사용의 도수에 따라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다. 즉, 건물·비품 등과, 2차적 생산을 목적으로 기업 내에 장기간 보유(保有)되는채란계·증계 등은 당 회계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결산에서는 그 감가(減價)한 액수를 측정해서 비용계정에 계상하는 동시에, 고정자산의 장부가격에서 그만큼 공제해야 한다.

⑥ 외상채권에 대한 대손(貸損) : 신용을 바탕으로 생산물을 제공한 외상매출금은 장래에 전액(全額)이 회수될 것을 예상하고 매출한 금액이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서 회수불능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만기일이 되어도 회수가 되지 않는 채무(債務)를 연체대금(延滞貸金)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영영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대손금(貸損金)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기업에서는 연체대금이 허다히 존재하게 되는데, 연체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전액 회수된다는 가정하에서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기말 결산에서는 대손예상액(貸損豫算額)을 책정해서,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하는 편이 불의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육성가족의 증가계산(增價計算) : 장차 산란제가 되어 제란을 생산하게 될 육성과정에 있는 초생추·대추에 대해서는, 그들이 회계기간 내에 자란만큼 금액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표시해 둘 필요가 있다. 농업회계나 축산회계에 있어서 증가계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특징적이다.

⑧ 구입현물과 미판매현물 : 사료, 수의약품, 비료, 연료 등의 구입현물(購入現物)과, 제란 부로일러등 미판매현물(未販賣現物)과, 일종의 미판매현물이긴 하지만 중간생산물(中間生産物)에 속하는 계분 등도 실제의 재고조사에 따라 적당히 평가하여 정리기입 하지 않으면 안된다.

⑨ 틀림의 수정 : 빠진 거래의 기록정리기입은 부주의로 인한 오류의 정정과는 구분이 되겠으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틀림이 있다든가 빠진 거래가 발견되면 이들도 바로잡아서 마지막 손질을 해야 한다.

이상으로 기말정리사항의 종류를 대략소개 했는데, 이외에도 현금과부족(現金過下足), 유가증권(有價證券)의 평가계산·비상손실(非常損失)등 여러가지가 있다.

물론 이상의 정리사항들에 대한 계산·평가·처리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회계절차상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번잡한 설명을 피하고, 서울양계장의 기말재고 조사에 따라 정리기입하는 과정을 밝아보기로 한다.

3) 재고조사표의 작성

결산정리라고 하는 부기상의 절차는, 경영의 정확한 손익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면서도 자산의 증감은 경영손익(經營損益)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산정리를 위한 준비로서, 우선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을 실지조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된 자산을 일괄하여 종류·수량·단가·금액 등을 하나의 표에 모으게 되는데 이 표를 재고조사표(在庫調査表), 혹은 재물조사표(在物調査表)라고 한다. 원래 재고조사라 함은 판매하고 남은 생산물의 수량을 실지 조사하는 뜻이나, 부기에서는 넓게 해석하여 단기간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재고 자산 뿐 아니라 결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즉 정리사항 전부를 찾아내는 것이다.

재고조사표는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10

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표로 그려진다.

재 고 조 사 표

년 월 일			
적	요	세 목	금 액

재 고 조 사 표

년 월 일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상각 기타	현재 평가	비 고

그러면 이미 소개한 서울양계장의 11월 결산을 함에 있어서, 월말의 정리 사항을 모아 보도록 한다.

① 감가상각비

전월에 대해서는 6,750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됨.

대기구에 대해서는 ₩3,500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됨.

산란계군에 대해서는 ₩30,000의 감가상각비가 계산됨

② 증가액

육성계군의 증식액(增殖額)은 ₩115,500으로 계산함.

③ 미판매현물의 월말재고

계란 : ₩42,000(3,000개, @₩14)

부로일러 : ₩76,800(480수 @₩160)

④ 구입현물의 기말재고

산란계사료 : ₩18,000(15포, @₩1,200)

⑤ 중간생산물의 기말재고

계분 : ₩12,000 (2%, @₩6,000)

이상의 정리사항들은 서울양계장의 11월 결산에 반영시켜야 할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들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 즉 수량·단가·금액 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되었지만 하여튼 위와 같이 평가산출(評價算出)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들사항은 분개장에 분개되고, 다시 분개장을 기초로 원장계정에 각각 전기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들을 전기한 후의 원장계정의 잔액은, 단순히 장부상의 잔액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재고까지도 반영한 원장잔액이 된다는 것을 앞의 설명에서 알 수 있으리라고 본다.

4) 정리기입

정리사항에 대한 평가·계산 방법은 뒤로미루고, 우선 정리기업을 위한 분개(결산정리분개)부터 앞에서 미리 정해진 금액에 따라 행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 자산 즉 건물에 대해서는

차) 감가상각비 ₩6,750

대) 건물 ₩6,750

이 분개는, 원장상의 건물계정 차변에 기입되어 있는 건물가격에서 감가상각비 부분 만큼 감액(減額) 시키기 위하여, 같은 건물계정 대변에 ₩6,750을 기입되도록 한 것이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계정에 차기(借記)하여 그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와같이 대기구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 만큼 자산가치를 감액시키고, 동시에 이것을 감가상각비 계정에 옮겨서 비용화(費用化) 한다.

차) 감가상각비 ₩3,500

대) 대기구 ₩3,500

그리고 산란계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가 이미 정해진 만큼 분개방법은 똑같다.

차) 감가상각비 ₩30,000

대) 산란계군 ₩30,000

이상 분개된 세가지의 분개는 차변에 공히 감가상각비 계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분개형식을 취한다.

차) 감가상각비 ₩40,250

대) 건물 ₩6,750

대기구 ₩3,500

산란계군 ₩30,000

② 증가액(增加額)

경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라는 하나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육성계군(育成鷄群)과 같이 장차 기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간내에 자란만큼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증가액(增加

額)을 계상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육성기(育成期)가 끝날때까지는 증가계산(增加計算)을 용역기(用役期)에 들어서는, 다시 감가상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증가계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하겠으나 일단 여기서는 비용가계산(費用價計算)을 하여, 회계기간동안 육성에 소요된 사양관리비, 즉 사료비·경비·노임 등의 제반 비용을 자산화(資産化)하여 육성계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미 장부에 당기(當期)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중에서, 육성계군을 위하여 직접 소요한 비용은 이를 빼내어 육성계군의 원가로 계산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이 어떤 계정의 잔액을 대차(貸借) 반대측에 기입하고, 동시에 그 금액을 다른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대체(對替)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같이 어떤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에 대체시키는 절차도 부기에서는 일종의 거래가 되므로 대체거래(對替去來)라고 한다.

그러므로 육성계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다음과 같이 된다.

차) 육성계군 ₩115,500

대) 구입사료비 ₩80,000

방역위생비 ₩5,500

노 임 ₩30,000

결국 이 분개에 의해서 육성제에 투자된 제비용(諸費用)은 그 만큼 비용계정에서 공제되고, 육성계군이라는 자산 계정은 불어나게 된다. 물론 여기서는 육성계군에 가산될 항목을 장부상의 확실한 것 만으로 한정했다.

③ 미판매 현물의 기말재고

이번 회계기간 내에 생산되어 아직 팔리지 않고 있는 생산물도, 아직 현금화(現金化)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해서 결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미판매 현물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복잡한 문제점들이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평가 방법도 뒤로 미루고 일단 지금은 위에서 산출된 금액에 따라, 남아 있는 생산물을 당기의 수익으로 계산하는 동시에 자산으로서 차기에 이월하는 분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차) 미판매현물 ₩118,800

대) 계란수익 ₩ 42,000

부로일러수익 ₩ 76,800

④ 구입현물의 기말재고

기 구입현물인 배합사료는 구입과 동시에 바로 구입사료비 계정으로 처리되어, 장부상으로는 전부다 써버린 것처럼 비용화 되어 있다. 그러나 기말 재고조사를 해본 결과는 아직 창고안에 15포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입 사료비라는 비용계정에서 남아 있는 부분을 공제해 줘야 하고, 동시에 남아 있는 사료의 금액을 선급비용(先給費用)이라는 계정에 대체시켜 이를 다음 회계기간에 이월시켜야 한다.

차) 선급사료비 ₩18,000

대) 구입사료비 ₩18,000

물론, 선급사료비 라는 계정은 손비계정이 아니고, 일종의 자산계정이다. 따라서 선급비용은 년도말 대차대조표에 자산과목으로서 기재되지 않으면 안된다.

⑤ 중간생산물

중간생산물(中間生産物)이라고 하는 것은 구입현물 처럼 밖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미판매 현물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가계(家計)에 제공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원래 중간생산물 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自家)의 경영내에서 생산되어 다시 자가의 경영내에 사용되는 현물류를 말한다. 이를 보면 자급사료(自給飼料)· 자급종자· 자급비료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현물류이다. 그러므로 일명 무시가물(無市價物)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계분을 중간생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미판매현물이나 부산물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계분을 자가경영 내부에서 다시 사용할 경우에는 중간생산물이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분의 시장가격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고 비료류의 상품으로서 얼마든지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분은 중간생산물에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말재고 조사의 항목 분류에는 미판매현물과

별도로 취급해준다.

중간생산물의 평가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계분에 대한 시가(市價)가 나와 있으므로 미판매현물과 같이 일단 다음과 같이 분개해 두기로 한다.

차) 중간생산물 ₩12,000

대) 계분수익 ₩12,000

⑥ 기타사항

11월 결산을 하기 위한 서울양계장의 결산 정리분개(決算整理分介)는 전부행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기간중에 틀린 분개도 바로 고쳐야 했다. 11월 7일의 거래(73 12월호 참조)를 합리적으로 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감가상각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합리적인 분개를 해서 우선 정확한 손익계산이 나오도록 바른 분개만 해 두기로 한다.

지난번 11월 7일의 거래는 성계사의 폐계 50수를 현금 ₩15,000에 판매한 거래인데, 여기에 대한 분개를

차) 현금 ₩15,000

대) 폐계수익 ₩15,000

으로 행했었다. 이 분개는 회계이론상 불합리한 분개이므로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바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위의 불합리한 분개를 다음과 같이 취소시킨다.

차) 폐계수익 ₩15,000

대) 현금 ₩15,000

그다음은 올바른 분개를 새로이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현금 ₩15,000

대) 산란계군 ₩15,000

따라서 정리기입에 필요한 분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가 된다.

㉠ 차) 폐계수익 ₩15,000

대) 현금 ₩15,000

㉡ 차) 현금 ₩15,000

대) 산란계군 ₩15,000

물론 이와같은 분개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으리라 본다. 그러나 추후 산란계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줄 안다. ㉠